

대구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나3102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익

변 론 종 결 2020. 12. 2.

판 결 선 고 2021. 1. 13.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5. 26. 선고 2019가소2810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8,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21. 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및 D, E, F, G, H, I, J(피고는 원고와 C을 제외한 위 D 외 6명의 고소를 대리하였고, 이하 위 7명을 'D 외 6명'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K의 임직원들인 L(대표이사), M 등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 계속 중에, 원고와 피고, C 및 고소인 대표 피고는 2019. 4. 30. 피고소인들을 대표한 M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합의(이하 '1차 합의'라 한다)하였다.

① 피고소인 대표 M은 2019. 5. 30.까지 피고에게 5,600만 원, 원고에게 2,500만 원, C에게 4,500만 원 합계 1억 2,600만 원을 고소인 대표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N)로 입금한다.

② 피고소인 대표 M이 위 ①항을 이행하였을 경우 본 합의 및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다. 다만 고소인 D 외 6명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D 외 6명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9. 5. 28. 피고소인들을 대표한 M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합의(이하 '2차 합의'라 한다)하였다.

① 피고소인 대표 M은 2019. 5. 31.까지 D 외 6명의 대리인인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O)로 합의금 1억 7,400만 원을 입금한다.

② 피고소인 대표 M이 위 ①항을 이행하였을 경우 이 건 합의가 된 것으로 하고,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

라. 피고는 2019. 5. 30. L로부터 피고 명의의 2차 합의에서 정한 농협계좌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6,000만 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1차 합의에 따라 L로부터 합의금 중 일부로 이 사건 6,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1차 합의에 따른 원고의 몫인 11,75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차 합의에 따라 이 사건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적어도 2,758,6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9. 28. 위 회사의 영업담당자인 P에게 원고의 딸인 E의 명의로 500만 원, 2018. 11. 28. 위 P의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원고의 딸인 E은 2차 합의의 당사자이고, 위 800만 원은 2차 합의에 포함된 돈인바, 피고는 E 명의로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한 원고에게 이 사건 6,000만 원 중 위 8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2,758,620원(= 8,000,000원 / 2차 합의 총액 174,000,000원 × 이 사건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L로부터 2차 합의에서 정한 계좌로 이 사건 6,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1차 합의의 당사자인 원고에게 위 돈의 분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피고는 2차 합의 전에 원고에게 E의 위임장을 요구하였으나, E의 위임장을 받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E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대리인으로 피고소인들과 사이에 2차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2차 합의에 E의 몫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먼저 L가 지급한 이 사건 6,000만 원이 어떤 채무에 대한 변제금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피고소인 L로부터 피고 명의의 2차 합의에서 정한 계좌로 이 사건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에서 설시한 증거와 갑4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L로부터 1차 합의와 2차 합의의 고소인들 모두를 위하여 이 사건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고소인들로부터 합의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는바, 수임인인 피고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81조).

따라서 피고가 일부 고소인들만 우선 변제받도록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수임인의 선관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비록 피고가 2차 합의에서 정한 계좌로 이 사건 6,0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지만, 피고는 2차 합의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만 위 돈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가 L에 대하여 2차 합의에 지정충당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1차 합의와 2차 합의에서 정한 계좌가 다르기는 하지만, 계좌를 달리 정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L의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합의에서 정한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2차 합의에 지정충당 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L는 이 사건 6,000만 원을 1차 합의에 따른 변제금의 일부로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다만 L가 1차 합의의 변제금으로 지정충당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1차 합의만의 변제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6,000만 원에서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5,000,000원[= 1차 합의에서 정한 원고의 합의금 25,000,000원 / (1차 합의 총액 126,000,000원 + 2차 합의 총액 174,000,000원) × 이 사건 60,000,000원] 중 원고가 항소심에서 지급을 구하는 바에 따른 2,758,6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6,000만 원을 수령한 다음날인 2019. 5.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이 원고가 항소심에서 구하는 돈을 인용하였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규, 판사 정인섭, 판사 최미복